검토사항 적합 여부 대상 요건 ①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ⅰ)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･배당･부동산(권리) 임대소득 합계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인 법인 ⅱ)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\* 수가 5인 미만 \* 상시근로자는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 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㉡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㉢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. 다만,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함 ㉣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ⅲ)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% 초과 예 아니요 (① ~ ③중 어느 하나에 해당시“예”)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\* ’18.2.13. 이후 법인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③ ②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(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로 한정) \* ’22.1.1.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(단,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과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,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) 확인서 제출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비치･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의 금액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「성실신고확인서」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요 ② 「성실신고확인서」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(150만원 한도)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요 ③ 성실신고확인 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「성실신고확인서」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\* 의 5%와 수입금액의 0.02%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였는지 여부 \*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･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예 아니요